

##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sup>1\*</sup>에 대한 최종견해

1. 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과 11일에 개최된 제2113차 및 제2116차 회의<sup>2</sup>에서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sup>3</sup>를 심의하고, 2024년 7월 19일에 개최된 제2127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 A. 소개

2. 위원회는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보고서 검토 및 대표단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보고절차를 수락하고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에 감사를 표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 대표단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정기보고서를 검토하는 동안 제기된 질문과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 B. 긍정적 측면

4. 위원회는 다음 문서의 당사국의 비준을 환영한다:

- (a) 2023년 1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b) 2022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c)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의 1930년 강제근로협약(제29호).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협약과 관련된 분야의 법률을 개정하고 도입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 (a)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4월.
- (b)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 (c)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sup>1</sup>\*위원회가 제80차 회의(2024년 7월 8~16일)에서 채택.

<sup>2</sup> CAT/C/SR.2113 및 CAT/C/SR.2116 참조.

<sup>3</sup> CAT/C/KOR/6.

(d) 2020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범죄 현장 대응 강화;

(e) 군인사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 '위수지역 구금' 제도 폐지;

(f)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도록 2020년 민법 개정;

(g)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도록 2021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 또한 위원회는 인권 보호를 개선하고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 당사국이 정책과 절차를 개정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환영한다:

(a) 2019년 변호인의 방청권 강화를 위한 계획 채택;

(b) 2020년에 물대포 사용을 제한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채택;

(c) 2024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채택;

(d) 2024년에 국가 폭력, 적대 세력,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 C. 주요 우려 사항 및 권고

### 이전 보고 주기에서 보류 중인 후속조치 사항

7. 위원회는 제3-5차 당사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청의 수사 결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모든 절차의 결과, 남아있는 "대용감방" 폐쇄 및 군인권보호관 사무소 설립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했다.<sup>4</sup> 2016년 12월 9일에 당사국이 제출한 답변,<sup>5</sup> 당사국의 제6차 정기보고서에 포함된 정보 및 대화 중 대표단이 제공한 추가 정보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의 14 (d) 및 (e) 항, 26 및 36 (b)항에 명시된 권고가 이행되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고문의 정의 및 범죄화

8. 위원회는 고문 행위가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해당한다는 대표단의 설명을 인지하지만, 고문이 협약 제1조의 정의에 부합하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sup>4</sup> CAT/C/KOR/CO/3-5/Add.1.

<sup>5</sup> CAT/C/KOR/CO/3-5, 8항.

범죄로서 아직 국내법에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형법은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완전하고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가해지는 고문도 다루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또한 신체적 상해와 사망을 초래하는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조 및 제4조).

9. 위원회는 이전 권고<sup>6</sup>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다음을 이행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a) 고문을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과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가해지는 고문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협약 제1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고문의 정의를 형법에 통합해야 한다.

(b) 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문 행위가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 시효

10. 위원회는 살인죄와 중대한 범죄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일부 고문 행위에는 7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1.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떠한 고문 행위도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근본적인 법적 보호장치

12. 법률 조력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근 조치들을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sup>7</sup> 이 권리가 "정당한 사유" 등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근거로 제한될 수 있어 검찰과 경찰이 변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구금자가 구금 초기부터 의사로부터의 진찰을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없을 수 있으며, 의사들이 고문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대한 의료 보고서를 검찰에 직접적이고 비밀리에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소년 구금시설의 심문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영상 및 음성 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제2조).

<sup>6</sup> CCPR/C/KOR/CO/5, para. 35.

<sup>7</sup> CCPR/C/KOR/CO/5, para. 35.

13.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구금 사유에 관계없이 구금 초기부터 모든 기본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법적,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체없는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해당 의사가 명시적으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의 감시 없이 독립적인 혹은 본인이 선택한 의사로부터 무상 의료 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권리, 고문 또는 가혹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상에 대한 의료 보고서를 검찰에 즉시, 직접, 비밀리에 제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소년 구금시설의 심문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심문의 영상 및 음성 녹화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심문이 적절하게 녹화되며, 영상 녹화물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제공되고, 협약 위반 사항을 식별 및 조사하기 위해 검토되며, 관련된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인권기구

14.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위원회 위원 선정 및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관찰한다. 또한 위원회의 임무에 대한 설명이 당사국이 비준하지 않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제2조, 11조 및 16조)에 명시된 국가 예방 메커니즘의 임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모든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이 없고, 예고 없는 방문을 수행할 수 없으며, 증인 없이 자유 박탈된 사람과의 비공개 면담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15. 당사국은,

(a)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다양성 및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을 위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b) 위원회에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폐쇄형 기관을 포함한 모든 자유 박탈 장소에 대한 예고 없는 방문을 수행하고 증인 없이 자유 박탈자와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인권위의 감시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c) 가능한 한 빨리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구금의 조건

16. 위원회는 구금장소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즉 진행 중인 건설 및 개보수 프로젝트, 가석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급여와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조치, 그리고 원격 화상 진료와 외부 의료지원의 이용이 늘어난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a)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도소 수용률이 113%에 이르는 과밀상태의 지속;

(b) 다인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수감자 당 2.58제곱미터)의 국제 기준 미달;

(c) 징계 조치로서 독방 구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최대 45일에 이르는 장기간의 독방 구금, 최근 취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이 독방 구금을 매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

(d) 몇몇 구금 중 사망 원인으로 보고되기도 한, 정신보건의료를 포함한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족;

(e) 구금 중 사망 사건들에서 유족에게 부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고 부검 결과를 통보하는 관행;

(f) 구금 중 사망과 고문 및 학대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독립 기구의 부재(제2조, 제11조 및 제16조).

17. 당사국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에 부합하는 구금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의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는 구금의 대안을 더 활용하고 교도소 및 기타 구금 시설 인프라의 개발 및 개조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비구금 조치에 관한 최소기준 규칙(도쿄 규칙)과 여성 재소자 처우 및 여성 피의자 비구금 조치에 관한 유엔 규칙(방콕 규칙)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b) 다인실을 포함하여 수용자 1인당 최소 생활 공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c) 독방 감금에 관한 법률과 관행을 국제 기준, 특히 넬슨 만델라 규칙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독방 감금을 넬슨 만델라 규칙 제45조 1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성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연속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고, 독립 심사의 대상으로 하며, 관할 기관의 허가에만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상태가 독방 감금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면 넬슨 만델라 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의 부과를 금해야 한다.

(d) 수용자에게 정신보건을 포함한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 인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자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e) 구금 중의 모든 폭력, 과도한 유형력 사용과 사망 사건은 가해가 의심되는 사람과 기관상·위계상 관련이 없는 독립 기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f) 구금 중인 사망에 관한 독립적인 법의학 검사를 보장하고, 사망자의 친족에게 부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사설 부검 의뢰를 허용해야 한다.

## 국가 보안법

18. 위원회는 '반정부단체'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찬양' 및 '고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이 본 협약 위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 특히 이러한 조항(제2조, 제11조 및 제15-16조)에 따라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이전 최종견해<sup>8</sup>를 상기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포함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동법이 협약에 부합하고 동법에 따른 체포 및 구금이 당사국의 인권 의무에 부합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사형

20. 위원회는 이전의 최종견해<sup>9</sup>를 상기하고 자유권위원회<sup>10</sup>의 우려에 공감하며, 1997년 이후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사형제 모라토리움을 인지하지만, 법원이 사형을 계속 선고하고 있고 상당수의 사형수가 남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제2조 및 제16조).

21. 위원회는 당사국을 다음과 같이 초청한다.

(a) 사형제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과 사형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b)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과거 사형수였던 수용자도 다른 모든 수용자와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며, 국제 기준에 따라 기본 권리와 필요를 보장해야 한다.

## 고문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진정 제도

<sup>8</sup> CAT/C/KOR/CO/3-5, para. 16.

<sup>9</sup> CAT/C/KOR/CO/3-5, para. 30.

<sup>10</sup> CCPR/C/KOR/CO/5, 23항.

22.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만, 구금시설에 구금된 모든 사람이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비밀이 보장되는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인권센터에 등록된 진정 건수가 적어 그 효과와 신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을 통해 제기되는 진정 건수는 많지만, 진정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기소 또는 구제 조치의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관찰한다(제2조, 11-14조 및 16조).

23. 당사국은,

(a) 경찰 구금 시설과 교도소를 포함한 모든 구금 장소에 독립적이고 효과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진정 제도를 구축하고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증인 및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b) 모든 구금 시설에서 기존의 진정 제도를 강화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진정인이 진정으로 인한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모든 진정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되고 해당 기관의 조사관과 가해 혐의자 사이에 제도적 또는 위계적 관계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d) 고문 또는 학대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마다 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고, 고문 및 학대 행위의 경우 가해 혐의자는 조사 기간 동안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고문 및 학대 행위의 가해 혐의자 및 그러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용인한 지휘책임자는 정식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 수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면담 원칙(멘데스 원칙)을 포함한 비강압적 면담 및 수사 기법에 대한 경찰관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선진 수사 도구를 도입하고 법의학 증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f) 공무원에 대한 고문, 학대, 과도한 무력 사용 및 강압 수단 적용에 대해 접수된 모든 진정 및 신고와 관련된 종합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진정이 조사로 이어졌는지, 조사로 이어졌다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했는지, 조사 결과 징계 또는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구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 교육

24. 위원회는 의료 종사자, 법집행공무원, 출입국관리 공무원, 군대 및 사법부에 제공되는 고문 금지 교육을 인정하면서도, 개정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부족함에 유감을 표한다(제10조).

25. 당사국은,

(a) 모든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 군인, 법원 공무원, 교도관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체포, 구금 또는 수감 대상자의 감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여될 수 있는 사람들이 협약의 내용, 특히 고문의 절대적 금지에 대해 잘 숙지하고, 협약 위반은 용납되지 않고 조사될 것이며 책임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적절히 처벌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의무적인 초기 및 재직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이 개정된 이스탄불 의정서에 따라 고문 및 학대 사례를 식별하고 보고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c) 고문 및 학대 사례를 줄이고, 그러한 행위의 식별, 기록 및 조사, 책임자 기소를 보장하는 데 있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 군대 내 폭력

26. 군대 내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위원회는 자살을 포함한 사망을 초래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군대 내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동성 성인 간의 합의된 성적 관계를 범죄화하고 이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2년 이하의 노역형”에 처하는 관련 처벌이 협약(제2조 및 제16조)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27. 위원회는 이전 권고<sup>11</sup>를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군대 내 자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압박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모니터링, 문서화, 조사하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b) 고문 및 가혹 행위 혐의와 자살을 포함한 모든 사망 사건이 가해 혐의자와 제도적 또는 위계적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철저히 조사되도록 보장하고, 직접적인 가해자와 지휘 체계에 있는 자의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c) 군형법 제92의6조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sup>11</sup> CAT/C/KOR/CO/3-5, para. 36.



## 정신 의료 기관 비자의 입원

28. 위원회는 보고 기간 동안 비자발적 입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주목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a) 자, 타해 위협을 하지 않는 다수의 정신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비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동의 입원' 제도에 따라 입원했다가 법정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여 '법정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후 퇴원이 거부되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

(b) 정신의료기관 비자발 입원 관련 절차적 안전장치가 불충분하고 부적절하다.

(c) 입원을 검토하는 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및 자원이 부족하고, 환자 대면 면담 없이 대부분의 사례가 결정되는 관행이 있다.

(d)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 병원 내 학대 관련 진정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29. 당사국은,

(a) 사법적 심사를 포함하여 고문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존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비자발적 입원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b) '동의 입원 심사' 제도를 개정하여 입원 심사를 위한 대면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c) 정신의료기관 내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 가능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내 모든 학대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 및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

(d) 지역사회에서 재활 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30.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시보호' 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지만, 동 법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수용하여 강제송환을 방지하겠다는 대표단의 약속에 주목하면서, 검토 대상 기간 동안 송환된 사례에 주목한다(제2조, 제3조 및 제16조).

31. 당사국은,

(a) 북한이탈주민의 자유 박탈은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건강권, 효과적인 독립적 검토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적 법적 보호 장치를 보장하고, 실제로 이러한 보호 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모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협약 제3조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 또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탈북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난민신청자와 이주민

32.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할당한 추가 자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의 낮은 난민 인정률과,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많은 사례(“불회부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2023년 3월 23일 결정에 주목하며, 이주 구금에 대한 법적 상한이 여전히 부재함에 우려한다. 또한, 자의적인 이주 구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며, 아동의 이주 구금이 이루어지는 관행,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필수적인 건강 및 기초적인 지원에 접근이 어렵다는 데에도 우려한다 (제2-3조, 11-13, 16조).

33. 당사국은,

(a) 난민인정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에 추가 자원을 배정하고, 불인정 결정과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며 이의 정지효력을 보장해야 한다.

(b)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불회부 사유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해야 한다.

(c)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이주 구금의 상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주 구금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이주 아동의 구금을 금하고 미동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비구금적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e)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가 취업 허가 및 필수적인 의료 건강 서비스, 기초 생활 지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인신매매

34. 2021년 4월,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이 법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형법에 규정된 관련 처벌이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35.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정의와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조항과 그 이행이 국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젠더 기반 폭력

36.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등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과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다른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를 확인하며,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a)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고소 건수, 낮은 기소율 및 유죄 판결의 비율, 관대한 형량

(b) 별도로 처벌 가능한 범죄로 부부 강간을 포함하지 않은 「형법」<sup>12</sup> 등 법률의 부재 (제2조, 제16조).

37. 당사국은,

(a) 가정 폭력을 포함한 모든 여성 폭력 사건, 특히 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당국 또는 기타 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폭력이 신고되고, 철저히 조사되며, 가해자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절한 제재와 함께 처벌되며, 생존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생존자와/ 또는 그 가족이 보호와 지원을 받고, 필요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구제, 재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전국 어디서든 충분한 예산으로 운영되는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 배우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로 정의되는 부부 사이의 강간을 적절한 처벌이 따르는 구체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 구제

---

<sup>12</sup> CAT/C/KOR/CO/3-5, para. 37

38. 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과 시설 수용 피해자들 중 극소수만이 보상과 재활을 포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많은 전(前) 일본군 ‘위안부’<sup>13</sup> 피해자가 완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 연령 및 취약성으로 인해 여전히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상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호(2012)에 설명되어 있는 당사국들이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제2, 23-24, 16조)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39. 당사국은,

(a) 국내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 복지 시설, 고아원, 기타 폐쇄형 시설의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 국가 폭력과 시설 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제기 없이도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 모든 전(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 만족, 재활 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c) 법적, 실질적으로 고문 및 가혹 행위의 모든 피해자가 협약 제14조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비롯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당사국은 법원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명령하고 고문 및 가혹 행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재활 수단을 포함한 구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하라.

#### 후속 절차

40. 위원회는 당사국이 2025년 7월 26일까지 기본적 법적 보호조치, 독방 감금, 정신건강 관리를 포함한 수감자의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 군대 내 고문 및 학대 혐의, 자살을 포함한 사망 사례에 대한 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단락 13, 17, 18, 19 참조). 13, 17 (c), 17 (d) 및 27 (b)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다음 보고 기간 내에 본 최종견해의 나머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 기타 문제

41.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를 적절한 언어로 공식 웹사이트, 언론 및 비정부기구를 통해 널리 배포하고, 그 배포 활동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sup>13</sup> A/HRC/54/24/Add.1, and CEDAW/C/KOR/CO/9 para. 30 (a).

42. 위원회는 당사국에 제7차 정기보고서를 2028년 7월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보고에 앞서 당사국에게 쟁점 목록을 전송할 예정이다. 해당 쟁점 목록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은 협약 제19조에 따른 일곱 번째 정기보고를 구성하게 된다.

---